



일본의 지방재정개혁의 정책적 시사점

이 창 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1. 서 론

일본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지방분권형 세재정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하여 三位一體 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삼위일체 개혁이란 [국가로부터 지방으로의 국고보조금의 삭감], [지방교부세의 개혁], [세원이양]이라는 3개의 개혁을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권한과 조직을 완고하게 지키려는 중앙부처의 벽이 너무 두터워 세원이양이 일부 실현되는 등 미흡하나마 성과는 나타나고 있으나 국고보조부담금의 폐지, 국가의 관여는 축소되지 않아 지방의 자유도는 높아지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의 지방분권은 미완의 개혁에 머물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이를 보완하고 지방행정 및 재정분권에 있어서 미완의 개혁을 완수하기 위하여 2006년 새로이 [신지방분권구상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차 지방분권의 추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분권형사회의 비전이라는 제목하에 일본의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7가지의 제언을 통해서 2007년부터 구체화되어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신지방분권구상검토위원회의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7가지 제언에 대한 목표 및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7가지 제언은 크게 3가지의 목표하에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목표는 분권개혁에 있어서 지방의 참가를 들고 있다. 분권개혁에 대한 지방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재정회의의 설치(제언1)를 제언하고 있다.

둘째 목표는 분권개혁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세재정면에서 합리적인 시스템 구축을 들고 있다. 분권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세재정면에서의 구체적 방안으로 5가지를 제언하고 있다. 지방세의 충실강화에 의한 불교부단체 인구의 대폭적인 확대(제언2), 지방교부세를 지방공유세로 전환(제언3), 국고보조부담금의 총건수를 절반으로 축소(제언4), 국가와 지방의 관계에 대한 총 점검에 의한 재정재건(제언5), 재정재건단체기준의 투명화와 자치단체장 및 의회책임의 강화 그리고 주민부담제의 도입(제언6)을 제언하고 있다.

셋째 목표는 분권개혁의 추진방안의 구체화를 들고 있다. 분권개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지방분권추진법의 제정(제언7)을 제언하고 있다.

이들 제언을 기초로 하여 일부는 제도화되어 지방재정개혁이 추진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고 나머지는 도입이 추진중에 있거나 지속적으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부터 기존의 재정재건법을 개선하여 지방재정재생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2008년부터는 기존의 지방교부세 제도의 산정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새로운 형태의 신행교부세(新型交付税)를 도입하고 있다.

본고는 최근 일본의 지방재정개혁 동향에 대해 삼위일체개혁 및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7가지 제언(이하 7제언이라 함)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의 일본 지방재정 개혁동향 및 사례를 검토하고 개혁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II. 일본 지방재정개혁의 최근동향 및 성과

1. 삼위일체개혁과 지방세 확충

일본은 1995년 7월에 발족한 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7년간의 활동을 끝내고 2001년 6월 14일 [최종보고-분권형사회의의 창조]를 마지막으로 해산했다. 이를 계승하여 2002년 6월 24일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2]가 완성되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세원이양을 포함한 바람직한 세원배분에 대해 삼위일체로서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 부처간의 논란을 거쳐 2003년 6월 27일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2003(骨太方針2003)]이 내각에서 결정되어 삼위일체 개혁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

어 200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개혁은 국고보조금 폐지 및 개선, 국가와 지방간의 세원 재배분을 통한 지방세 확충, 지방교부세제도의 간소화 및 개선을 말하고 이들 3개를 일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개혁한다는 의미이다.

삼위일체 개혁의 세원이양에 대해서는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여전히 목표에 미달되어 2007년부터 새로이 7제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삼위일체 개혁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세원 확충을 통해 국세대 지방세의 비율을 50대 50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답보상태에 그치고 있다. 세원이양은 기간세인 소득세와 소비세에 대해 국가에서 지방으로 세원을 이양하는 것이 개혁의 중심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2007년 현재 국세가 60%인 반면 지방세는 40%에 그치고 있어 삼위일체 개혁의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일본의 경우도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국가로부터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전지출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1〉 국세·지방세수입 비중 한일비교

구분	2006		2007	
	한국	일본	한국	일본
국세(%)	78.1	60	79.5	59
지방세(%)	21.9	40	20.5	41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는 성과는 다소 나타나고 있다. 2007년 지방재정계획 규모는 83.1조원으로 전년대비 거의 변동이 없는데, 이중 지방세가 40.3조원으로 지방세입의 48.6%를 차지하고 있어 2006년도의 42%보다 높다.

〈표2〉 일본 지방재정 세입구조 및 구성비

구분	2007년도		2006년도	
	억엔	구성비	억엔	구성비
지 방 세	403,728	48.6	348,983	42.0
지 방 양 여 세	7,091	0.9	37,324	4.5
지 방 특 레 교 부 금	3,120	0.4	8,160	1.0
지 방 교 부 세	152,027	18.3	159,073	19.1
국 고 지 출 금	101,739	12.2	102,015	12.2
지 방 방 채	96,529	11.6	108,174	13.0
사 용 료 및 수 수 료	16,455	2.0	16,450	2.0
잡 수 입	50,572	6.0	51,329	5.2
계	831,261	100.0	831,508	100.0

이상과 같이, 일본은 삼위일체 개혁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하에 2007년 새로이 지방재정자립 7제언을 통해서 지방세원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원의 편재성이 적은 거주지 과세인 지방소비세와 개인주민세를 강화하여 지방교부세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세금으로 자주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수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의 세제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수정을 하는데 있어서 국가와 지방의 최종지출 비율과 조세수입 비율의 괴리를 축소하고 지방이 담당하는 사무와 책임에 맞도록 국가와 지방의 세원배분을 우선은 5대5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4대6이 되도록 국세의 대폭적인 지방세로의 세원이양이 추진되고 있다.

2. 지방교부세 개혁과 신형교부세 도입

일본의 지방교부세 개혁은 삼위일체 개혁에서 주요 과제가 되어 왔고 또한 200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7제언에서도 구체화되고 있다. 지방교부세 개선의 기본은 산정방식의 간소화 및 신형교부세의 도입 등이 핵심으로서 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교부세에로의 의존체질로부터 탈피하여 불교부단체의 인구비율을 대폭적으로 높여나간다는 구상이다.

첫째, 지방교부세의 산정방식에 있어서 지방교부세의 효율적인 운영을 촉진하고 경영노력에 대응한 산정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개혁에 필요한 경비를 기준재정수요액에 새

로이 산입하고 행정개혁의 실적을 나타내는 지표(예를 들어, 인건비 및 물건비등 고정경비의 비율이나 그 삭감을 등)결과에 대응하여 증감하기로 하고 있으며 또한 징세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징수율 등의 징세노력에 대응하여 증감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07년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었는데, 주요 개정사항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지방행정에 필요한 경비를 개별산정경비와 기타 경비(이하 포괄산정경비라 함) 2종류로 구별하고 있다는 점이다. ②개별산정경비에 있어서 종래 경상경비와 투자적경비의 구분을 없앴다는 점이다. 이 구별을 없앤 것은 산정항목의 대폭적인 간소화가 구체화된 것에 따른 결과이다. ③후술하는 신형교부세를 도입함으로써 포괄산정경비의 측정단위를 인구와 면적으로 간소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표3〉 산정항목의 축소

	2007년도 산정항목 수	2008년도 산정항목 수
도도부현	42	32
시정촌	53	36
합계	95	68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주재원인 지방세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세출억제에 노력하고 국세의 지방세로의 세원이양을 추진하여 국가와 지방의 세수비율에 대해 향후 3년내에 국가와 지방의 세수비율 1:1정도가 되도록 세원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인구 20만 이상의 시(2007년 3월 31일 현재 112단체)의 절반이 불교부 단체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즉, 지방교부세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세금으로 자주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과반수가 되도록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불교부 단체수는 6%(20만 이상의 시의 22%), 인구대비 18.4%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무성에서는 불교부 단체를 인구대비 1/3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경우, 불교부 단체수는 10%, 20만 이상 시의 41%).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5조엔 규모의 세원이양을 추진하고 신형교부세를 통해서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표4〉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수

		2003	2004	2005	2006	2007
도도부현분	교부	46	46	46	46	45
	불교부	1	1	1	1	2
	계	47	47	47	47	47
시정촌분	교부	3,114	3,076	2,964	2,249	1,651
	불교부	104	114	136	146	169
	계	3,218	3,190	3,100	2,395	1,870
합계	교부	3,160	3,122	3,010	2,295	1,696
	불교부	105	115	137	147	171
	계	3,265	3,237	3,147	2,442	1,867

셋째, 2008년부터 새로운 형태의 신형교부세를 도입하여 지방교부세의 산정방식의 개선을 촉진하고 지방교부세 수여 인구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지방교부세는 복잡한 산정방식으로 되어 있어 간소화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는 산정결과로 보면 상당부분 인구와 면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방식을 개선하면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의 간소화, 객관화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와 같은 논의의 결과로서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신형교부세가 제기되었다. 신형교부세 산정방식의 기본은 지방교부세 산정 전체를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도려내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지방교부세 기준으로 산정하여 조정한다는 것이다.

신형교부세의 핵심은 신지방분권추진의 일환으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및 기능의 변화 등을 반영하고 복잡하고 난해한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보다 간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동 제도는 지방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국가의 규제나 국가가 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부분을 축소시켜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로이 세출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로이 세출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복잡한 지방교부세의 산정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간소한 산정기준으로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신형교부세는 도도부현분, 시정촌분 모두 인구 규모의 코스트 격차를 반영한 인구와 택지, 경지 등의 토지이용형태의 코스트 격차를 반영한 면적에 의해 산정하고 있다.

2007년도 기준재정수요액을 분석한 결과, 인구에 의한 재정수요와 면적에 의한 재정수요는 도도부현분의 경우에는 대략 3:1정도, 시정촌분의 경우에는 대략 10:1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정촌분이 인구에 의한 재정수요의 비율이 높다. 이것은 도도부현분과 시정촌분 모두 경상경비의 지역진흥비 및 기타 제경비의 인구 관련 재정수요의 비율이 높음과 아울러 도도부현분에 대해서는 하천, 농업행정비 등의 면적 관련 재정수요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시정촌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하수도, 초중학교비, 청소비 등의 인구관련 재정수요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포괄산정경비인 신형교부세의 도입에 의해 특히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일부 재원보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기준재정수요액이 증가하는 자치단체는 1,282단체이고 역으로 감소하는 자치단체는 585단체로 나타나고 있다.

〈표5〉 신형교부세 도입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 증감

	자치단체수	증가단체수	증가단체의 평균변동액(억엔)	감소단체수	감소단체의 평균변동액(억엔)
도도부현, 지정도시	62	31	2.6 (0.1%)	31	-3.8 (-0.1%)
중핵시, 특례시	75	36	0.6 (0.1%)	39	-0.6 (-0.1%)
기타 시	689	432	0.4 (0.3%)	257	-0.3 (-0.2%)
정촌	1041	783	0.2 (0.7%)	258	-0.2 (-0.4%)

3. 국고보조금 총건수 반감 및 보조금의 축소폐지

국고보조금 개혁에 대해서는 삼위일체 개혁의 중요한 과제로서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대략 4조엔 정도를 폐지하거나 감축하는 등의 개혁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2004년에 국고보조금중 1조 300억엔 정도가 폐지 및 감축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크게 진전을 보이지 못하여 새로이 2007년부터 7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국가와 지방의 역할분담을 재정리하고 명확히 한 후에 재정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하에 열거하는 기본적 사고에 기초하여 국고보조부담금을 폐지

(일반재원화)하여 총건수를 절반으로 축소시켜 국가에 의한 관여 및 의무부여의 폐지 및 축소, 국가와 지방의 이중행정의 해소를 유도함과 아울러 국가 직원수의 삭감과도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다.

- ① 특정의 사무 및 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장려적 보조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폐지(일반재원화)한다.
- ② 보편적, 경상적으로 행해지는 시설정비에 관계되는 국고보조부담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폐지(일반재원화) 한다.
- ③ 국가가 일정수준의 확보에 책임을 져야하는 행정분야에 대해서 부담하는 경상적인 국고보조부담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의한 복지, 교육 등 대인서비스에 의한 사회적 safety net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수요에 대응한 시책을 주체적으로 실시해 간다는 기본사고를 바탕으로 생활보호 등 반드시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분야로 한정한다.
- ④ 공공사업등 투자적인 국고보조부담금의 경우는 지역편재성이 적고 주민에게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일반재원화)한다.
- ⑤ 단순히 국고보조부담금의 삭감은 부담전가에 불과하므로 추진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된 것은 완전폐지(일반재원화) 하든가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린다.
- ⑥ 국고보조부담금의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국고보조부담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 및 내용을 가지고 있는 국고보조부담금, 교부금, 통합보조금(자치단체의 재량을 높이는 관점에서 자치단체가 사업수 및 내용을 정하여 복수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서 신설되었다. 그러나 사무절차가 기존의 국고보조부담금 사업과 변함이 없고 여전히 국가가 사업수 및 내용을 관여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높여 주었다고는 평가할 수 없다)은 신설하지 않는다.

4. 중앙과 지방의 협의기구 설치

삼위일체 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의 개혁의 일환으로 자치단체가 제도결정의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었으나 제도화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지방분권일괄법에서 국가와 지방의 관계를 [상하복종]에서 [대등협력] 관계로 규정한 의의를 구체화하고 지방분권 추진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자치단체가 행재정운영에 있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의 역할분담 및 지방세재정제도 등에 대해 국가와 지방이 공동테이블에 앉아 협의하는 [內政

의 정책입안에 대한 지방의 참가] 시스템으로서 [지방행정재정회의]를 법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예를 들어, 1950년 샤프권고에 의거해서 일시적으로 설치된 지방재정위원회를 다시 구축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으나 현실화되지 못하여 2007년 7제언에서 재차 재기되어 지방행정재정회의(가칭)의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동 회의의 취지는 분권개혁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한 정부의 정책입안 및 집행에 관해서 정부와 지방의 대표자 등이 협의를 통하여 지방의 의견이 정부의 정책입안 및 집행에 반영되도록 새로운 조직을 법률에 의해 설치하기로 하고 있다. 지방행정재정회의가 법률에 의해 설치될때까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관련 제도에 대한 지방의 사고가 국가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현재의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을 유지하여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방재정위원회의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현행의 지방재정심의회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계획, 지방교부세, 지방세, 국고보조부담금 등에 관련한 사항의 심의에 있어서 그 권한을 강화함과 아울러 지방6단체의 대표를 추가로 참가하게 하여 그 명칭을 [지방재정위원회(가칭)]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5 재정재건법의 지방재정재생제도로 전환

7제언에서 제시된 국가와 지방에 있어서 행정재개혁 및 재정재건을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의 재정재건법을 2007년부터 지방재정재생제도로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1954년 재정재건법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자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재정재건법)에 의해 재정재건단체가 되어 긴축재정을 기본으로 하는 경비절감 및 지출효율화를 위한 재정재건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지방행정 및 재정구조, 그리고 재정운용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상황속에서 재정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에 대해 지방의회, 시민, 시장에 대한 재정공시가 충분하지 않아 현행 제도가 조기사정 등에 대해 적절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나아가 재정재생을 촉진하는 체계가 불명확하고 또한 재정재생을 기대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새로운 재정재건법으로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도개선이 추진되었다.

기존의 재정재건제도하에서는 현실적으로 재정상태가 불합리한 자치단체에 있어서 조기사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재건단체화 혹은 재정재건단체가 되는 기채제한비율에 해당되는 것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보니 오히려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北海道 夕張市(홋카이도 유바리시)의 거액의 일시차입금에 의한 재정운영과 이에 따른 위법적 회계처리가 현행 재정재건제도의 역기능의 사례로 꼽고 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룰에 기초하여 조기시정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조기시정체계에 의해서도 지방재정을 자주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인 재생체계로 넘어가는 2단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조기시정체계와 재생체계는 양자가 종합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기능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각종 재정지표에 대해서도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①플로지표나 스톡지표 모두 복잡하지 않고 자의성을 배제한 객관적인 지표로 할 것. ②스톡지표는 일반회계가 직접 부담하는 채무 뿐만 아니라 공기업, 일부사무조합, 지방공사, 제3섹터 등 실질적으로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채무를 포착하여 설정할 것. ③지표의 기초 데이터를 공시할 것. ④감사기능의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즉, 조기시정, 재생체계에 적합한 지표의 설정을 검토하고 있고 이외에도 재정재생 판단지표의 전제가 되는 데이터의 객관성, 정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고 재정규모 등의 차이를 고려한 지표의 설정도 중요한 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새로이 개선된 지방재정재생법의 조기시정체계와 재생체계는 양자가 종합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기능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조기시정단계와 재생단계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그림1〉 조기시정단계와 재생단계의 개념

전제조건	재정악화 단계		조치방향	조치수단
정보공개의 철저, 투명한 룰의 제정	건전단계	정상적 재정운영 상태		
	조기시정 단계	플로 및 스톡의 객관적 지표가 일정수준에 도달한 경우(국가나 도부현의 분석 및 조언 실시)	-자주적인 개선노력에 의한 재정건전화 -자주적인 개선노력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국가 및 도부현이 관여	-재정건전화계획을 책정하고 공표 -자주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여(계획의 수립 및 효과제고를 위한 조치)
	재생단계	플로 및 스톡의 객관적 지표가 더욱 악화하여 일정수준에 도달한 경우(국가나 도부현의 분석 및 조언 실시)	-국가 및 도도부현의 관여에 의한 재생 (지방행정재정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추진되는 경우)	-재생계획의 수립과정에서의 관여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관여 -재생촉진책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자치단체에로의 영향, 사법적 관여의 방향, 대상이 되는 범위 등에 대해서도 수단 강구)

Ⅲ. 맺는 말: 정책적 시사점

이상과 같이 일본은 최근 삼위일체 개혁 및 지방재정자립 7제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방재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재정개혁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 지방재정개혁에 있어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삼위일체 개혁은 국고보조금의 대폭적인 폐지 및 감축, 소득세 및 소비세 등 기간세의 지방이양, 지방교부세의 개선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개혁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삼위일체 개혁이 비록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고는 하나 삼위일체 개혁을 설정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지방분권시대에 어울리는 지방세재정기반을 확립한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국가와 지방의 역할분담을 고려한 세원이양에 의한 지방세재원의 충실강화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정책적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지방교부세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신형교부세는 우리나라 지방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산정 등 지방교부세 산정방법의 개선 논의, 조정교부금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 ① 복잡한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해 일부분이지만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서 산정방식을 간소화하고 투명하게 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② 단위비용의 수도 30%를 감소하여 대폭적으로 간소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③ 지역진흥비를 새로이 신설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낙도, 과소지역에 대해 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④ 필요한 지방 재원을 명확하게 보장한다고 하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의견교환을 통하여 현실의 재정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가의 관여를 축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이 신형교부세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기존의 재정재건법을 지방재정재생제도로 개선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재정악화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여 조기에 대응하게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재정재생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장치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 등이 일본 지방재정운영상 특징적인 점 및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개선 혹은 지방재정파산법 등의 검토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기에 재정악화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재정을 건전화하고 재생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과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